

No. 16

행정 명령

**ESSEX 카운티 재해구역 선포**

2011년 4월 27일 이후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한 심한 뇌우가 계속되어, Essex 카운티 내의 중요한 대중 교통과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주고, 공공 보건 및 공공 안전 시스템을 위협했으므로; 그리고

이 일은 광범위한 홍수, 정전, 그리고 도로와 공공 시설, 거주지, 및 사업현장을 훼손하고 공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며, 공공 보건 및 공공 안전에 계속해서 위협을 제기할 것이므로;

**이제, 그러므로, 나, Andrew M. Cuomo** 뉴욕 주지사는, 헌법 및 뉴욕주 법에 따라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, 재해가 일어났으며 피해지역의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,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2-B조 섹션 28에 따라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, 나는 이로써 2011년 4월 29일을 기하여 Essex 카운티 경계 내에 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.

또한, 행정법 2-B조 섹션 29에 따라, 2011년 4월 28일을 기하여, 주 재해 준비 계획 (State Disaster Preparedness Plan) 시행을 지시하며, 주 비상관리실 (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), 보건부 (Department of Health), 교통부 (Department of Transportation), 주 경찰, 환경 보존부 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), 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 (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), 공공 서비스 위원회 (Public Service Commission), 화재예방 및 진압실 (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), 공원, 레크리에이션, 및 역사 보존실 (Office of Parks,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), 일반 서비스실 (Office of General Services), 미국 적십자 (American Red Cross) 및 그 외 주 기관들에게, 필요한대로, 이 재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로 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지역 지방정부와 주민을 도울 적절한 행동을 취할 권한 및 공공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권한을 줍니다.

**또한, 나는 이 일을 위해 Andrew X. Feeney** 주 비상관리실 책임자를 주 조정위원으로 임명합니다.

이천십일년 사월 이십구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

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실장